Citibank

citi

기업구매자금결제 이용 약정서

(판매기업용)

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 20 년 월 일

인감대조

본 인 ㊞

주 소

본인은 은행에 기업구매자금 환어음 추심(이하 "추심" 이라고 합니다)의뢰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합니다.

제 1 조 (서류의 제출)

본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합니다.

① 제출서류

1. 환어음(기업구매자금용)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(기업구매자금용)
2. 세금계산서 원본
3. 기타 은행이 요청하는 서류

② 컴퓨터 등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③ 판매대금을 은행에서 정한 「인터넷결제」방식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서류는 은행이 본인을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, 그 진위여부는 인터넷상에서 본인이 확인합니다.

④ 판매대금을 은행에서 정한 「결제관리서비스」방식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는 은행이 본인을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제 2 조 (입금계좌 지정)

추심대금의 입금계좌는 다음계좌로 지정합니다.

(예금주 : **계좌번호 :** 입금계좌 ㊞)

입금계좌 인감대조

제 3 조 (지급거절 통지)

구매기업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접수한 때에 은행은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.

제 4 조 (면책사항)

제출서류의 허위, 위·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,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

제 7 조 (기타 특약사항) 본 인 : (인)

본인은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음.

본 인 : (인)